

제5조(협약의 변경)

양 기관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협약의 변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여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한다.

제6조(비밀유지)

각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 중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유출하지 않는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 한다.

2015. 10. 26.



총 장 홍 덕률



본 부 장 이 태형

Handwritten signature of Hong Deul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

Handwritten signature of Lee Tae-hyeong

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

관한 서면 물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본 협약은 양 기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일방으로부터 해지에

제4조(효력발생 및 유지)

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양 기관은 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

제3조(협약의 이행)

가. 지역 건강검진 및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 활동
나. 보건, 사회복지 분야의 인적 교류와 정보교환, 인성철들
다. 본교 졸업생의 인턴쉽 참여 지원
라.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

제2조(협력내용)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
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자 한다.

제1조(목적)

대구대학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(이하 "양 기관"이라 한다)는
상호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으로 우수인재 양성과 건강증진사업에 의해
공동으로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류협약을 체결한다.



상호교류협력약서

대구대학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

